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김경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74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김경훈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김규남, 김영철,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영한, 박춘선, 송경택,
이상욱, 이영실, 이은림,
이종배, 장태용, 정준호,
정지웅, 최진혁, 허 훈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야생조류 충돌 방지 방안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실시 및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인공구조물 사고발생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충돌 방지 대책)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소유자·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류 이동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공공건축물 심의·자문 시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자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은 제5조(실태조사) 및 제6조(교육 및 홍보)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은 제5조(실태조사) 및 제6조(교육 및 홍보)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